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7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김은혜・이성권・신동욱

김장겸 • 권성동 • 엄태영

조지연 · 서일준 · 윤상현

서명옥 의원(10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켰음.

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,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·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의견(헌법재판소 2024. 5. 30. 선고 2022헌바238등 결정의 반대의견)이 제기되고,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에 대한논란이 지속되어 왔음. 또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온 상황임.

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

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

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국세기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교부세법」 및 「종합부동산세법」에 따라 부과·감면되었거나 부과·감면되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국세기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교부세법」 및 「종합부동산세법」에 따른다.

제3조(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종합부동산세법」에 따라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3조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종전의 「종합부동산세법」에 따른다.

제4조(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대상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종합부동산세법」에 따라 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「종합부동산세 법」에 따른다.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22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.

제35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"를 "증여세"로, "우선하며,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"를 "우선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제7항 중 "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"를 각각 "증여세"로 한다.

제45조의2제6항을 삭제한다.

제47조의2제1항 중 "「농어촌특별세법」 및 「종합부동산세법」"을 "「농어촌특별세법」"으로 한다.

제55조제2항제2호의3을 삭제한다.

제59조의2제1항제4호 중 "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"를 "증여세"로 한다.

②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같은 법 제66조제3항, 「종합

부동산세법」 제16조제3항 후단"을 "같은 법 제66조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제4항 중 "제8호"를 "제7호"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"제4호 및 제6호"를 "제4호"로 한다.

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"종합부동산세·법인세"를 "법인세"로 한다.

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1항 중 "재산세·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"를 "재산세 및 교육세"로 한다.

⑦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 중 "「소득세법」 또는 「종합부동산세법」"을 "「소득세법」"으로 한다.

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.

제63조제6항 중 "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"을 "재산세액"으로 한

다.

제104조의13을 삭제한다.

제104조의19를 삭제한다.

⑨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"제1항제2호의 금액 + 제1항제5호의 정산액"을 "제1항제5호의 정산액"으로 한다.

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"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"를 "목적세"로 한다.

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1조제1항 중 "관세·종합부동산세"를 "관세"로 한다.